

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1. 1. 19 선고 2020가단170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 조합

피 고 B

판결 선고 2021. 1. 19

주 문

1. 별지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가. 피고와 C 사이에 2020. 4. 6.자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20. 4. 10. 접수 제3975호로 마친 소유권 이 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 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1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 판결)

판사 편병호

별지